

공항철도(주) 신입직원 모집

도심과 공항, 수도권과 지방, 국내와 세계의
허브역할을 하는 공항철도가
미래를 함께 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우수인재를 모집합니다.

2017년 10월
공항철도(주) 사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비고
		계	일반전형	특별전형	장애인전형	
6급	합계	27명(이내)	23명(이내)	2명(이내)	2명(이내)	-
	사무영업	17명(이내)	13명(이내)	2명(이내)	2명(이내)	-
	전산(AFC)	2명(이내)	2명(이내)	-	-	-
	신호통신	2명(이내)	2명(이내)	-	-	-
	토목	1명(이내)	1명(이내)	-	-	-
	장비운전	1명(이내)	1명(이내)	-	-	-
	승강/PSD	2명(이내)	2명(이내)	-	-	-
	차량	2명(이내)	2명(이내)	-	-	-

※ 채용분야(응시직종) 간 중복지원은 불가

2. 지원 자격

가. 일반전형

- 1) 자격 : 공고일 기준 만 20세이상 인자 (1997. 10. 22. 이전 출생)
- 2) 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2017. 10. 22. 기준)
- 3) 결격사유 : 우리회사 인사규정 제11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 (붙임1)
- 4) 근무조건 : 교대근무 가능자

나. 특별전형

- 1) 자격조건 : 現 공항철도 영업분야 협력업체 재직자로 2년 이상 근무자
* 사무영업에 한함
- 2) 자격요건이외에는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

다. 장애인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채용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필기전형시 인성검사만 시행(이외 절차는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

* 사무영업분야에 한함(타 분야 지원시 가점만 적용)

라. 공통 및 필수자격

분 야	필수자격	우대사항
공 통	- '17.10.22일 기준 병역필(면제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교대근무 가능자	- 장애인 또는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사무영업	- 철도종사자(신호취급)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외국어 능통자(영어, 중국어, 일어) - 컴퓨터, 경영정보, 교통 관련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전 산 (AFC)	- 전자, 정보통신, 전산, 컴퓨터, 자동제어, 전기 관련 전공자 - 철도종사자(신호취급)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외국어 능통자(영어, 중국어, 일어) - 전자, 정보통신, 전산, 컴퓨터, 전기, 자동제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신호통신	- 전기,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자동제어 관련 전공자 - 철도종사자(신호취급)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호,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소지자
토 목	- 토목공학 관련 전공자	- 토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장비운전	- 전기/전자/자동제어 관련 전공자 - 철도종사자(장비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철도장비운전면허 소지자 - 전기/전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승강/PSD	- 기계/전기/전자 및 승강기 관련 전공자	- 기계/전기/전자 및 승강기 관련 자격 소지자
차 량	- 기계, 전기, 전자, 통신, 제어계측 관련 전공자	- 철도차량 관련 자격 소지자 - 기계/전기/전자 관련 자격 소지자

3. 입사지원서 접수

- 1) 접수기간 : '17. 10. 23.(월) ~ '17. 10. 30.(월), 15:00까지
- 2) 접수방법 : 인터넷(온라인) 접수만 가능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3) 접수 : <http://oras.jobkorea.co.kr/arex>
- 4) 유의사항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학점, 자격증명, 영어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영어점수 사본 등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전형절차

1) 필기전형(필기시험 + 인성검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자 : 2017. 11. 4.(토), 10시 ~
- 장소 : 추후 공지
- 필기시험 : 직업기초능력검사 + 일반상식 (고득점자 순)

직업기초능력검사	일반상식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기본상식

- 인성검사 : 직무수행 등에 요구되는 기본 인성 측정

2) 면접전형

- 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일자 : 2017. 11. 9.(목), 10시 ~
- 장소 : 공항철도 대회의실
- 평가항목 : 대인관계, 책임감/협력성, 성품/인성, 직장관(직업관) 등
- * 진행방식 : 조별 집단면접(多:多), 자기소개 후 질의응답

3) 신체검사 및 철도적성검사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

* 사무영업(전산) 및 신호통신, 장비운전 등 신호취급 적성검사 등에 관한 불합격 판정 기준 적용(철도적성검사) (판정기준 붙임파일 참고)

4)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철도적성검사 모두 합격한 자

* 사무영업(전산) 및 신호통신, 장비운전 등 신호관련 직종은 철도적성검사 불합격시 탈락

- 신원조사(조회) 결과 부적격자 탈락

5. 시험일정

채용 절차		일 정	비 고
○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		10.23. ~ 10.30.	오후3시까지
○ 서류전형	심 사	~ 10.31.(화)	-
	합격발표	~ 11.1.(수)	
○ 필기전형	필기시험	11.4.(토)	-
	인성검사	11.4.(토)	
	합격발표	~ 11.7.(화)	
○ 면접전형	면 접	11.9.(목)	-
	합격발표	~ 11.10.(금)	
○ 철도적성검사		11.14.(화)	코레일 인재개발원
○ 신체검사		11.15.(수)	지정병원
○ 최종 합격자 발표		~ 11.17.(금)	-
○ 신입사원 입사		11.27.(월) ~	-

※ 채용일정은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에 변경된 일정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6. 공지사항 및 유의사항

- 1) 채용직종 및 전형간 중복지원을 포함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2)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의 허위내용 또는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언제든지 합격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3)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우리 회사 입사지원이 제한되오니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허위내용 입력, 결격사유 발견 시 고의성 여부와 관계 없이 합격이 취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5)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궁금하신 사항은 FAQ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Q&A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7) 채용관련 문의 (평일 9 ~ 18시) : 032-745-7223

붙임-1 채용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1조)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8)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 9) 청탁, 부당채용 등 채용비위 행위로 채용된 자

붙임-2 철도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검사대상 직무	주기	검 사 항 목		불 합 격 기 준
		문답형	반응형	
역무/AFC	최초 검사	· 지 능 · 작업태도 · 품 성	· 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 민첩성 - 적응능력 - 판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자(해당 연령대 기준 적용) · 작업태도검사, 주의배분능력검사, 적응능력검사, 판단력 검사, 동작 정확력 검사 중 부적합등급이 2개 이상이거나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가 50점 미만인 자 · 품성검사 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
신호통신/ 차 량	최초 검사	· KR지능 · 작업태도 · 품 성	-	· 지능능력검사 표준점수 85점 미만인 자 불합격 · 품성검사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 · 품성검사결과 "요관리형"이고, 작업태도검사결과 "문제형"인 자는 불합격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결함
 -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 다. 난치성 사상충병(絲狀蟲病)
 -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비강(鼻腔)·구강·인후기관 계통
 -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 가. 아래턱관절 강직(強直), 저작근(咀嚼筋)의 질환 또는 악골(顎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흉부
 -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심부전증(心不全症)
 -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 다.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礙)
 - 라. 동맥류
 - 마. 유착성 심낭염
 - 바. 관상동맥질환
 - 사. 폐성심(肺性心)
6.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脾機能亢進症)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7. 생식비뇨기 계통
 - 가. 중증 요실금
 -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紫色斑)
- 다. 재생불량성 빈혈
-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 마. 진성 적혈구증가증
-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 2) 외상성 신경질환
 - 3) 말초신경질환
 -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6) 뇌전증(腦電症)

11. 사지(四肢)

- 가. 보조 장구(裝具)를 사용하더라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12. 귀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 나. 두 눈의 시야협착(視野狹窄)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複視)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14. 정신 계통

-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
- 라.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2. 철도안전법시행규칙(사무영업, 차량, 운전분야)

검사 항목	불합격 기준
	최초검사·특별검사
가. 일반 결함	1)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2) 중증인 고혈압증 (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이고,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인 경우) 3)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나. 코·구강·인후 계통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다. 피부 질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 피부질환자 및 한센병 환자
라. 흉부 질환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2)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3)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마. 순환기 계통	1) 심부전증 2)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분당 150회 이상)이나 기질성 부정맥 3) 심한 방실전도장애 4) 심한 동맥류 5) 유착성 심낭염 6) 폐성심 7)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바. 소화기 계통	1)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2) 간경변증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3)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사. 생식이나 비뇨기 계통	1) 만성 신장염 2) 중증 요실금 3) 만성 신우염 4) 고도의 수신증이나 농신증 5) 활동성 신결핵이나 생식기 결핵 6) 고도의 요도협착 7)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8)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아. 내분비 계통	1)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 2)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 및 애디슨 병 3) 그 밖에 쿠싱증후군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4) 중증인 당뇨병(식전 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

자. 혈액이나 조혈 계통	1) 혈우병 2)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3)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4)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5) 진성적혈구 과다증 6) 백혈병
차. 신경 계통	1)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앉아 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 2)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4) 두개골 이상,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이나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6)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7)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8)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보행 실조증, 다발성 경화증)
카. 사지	1)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 2) 난치의 뼈·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
타. 귀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
파. 눈	1)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경우 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4)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5) 색각이상(색약 및 색맹)
하. 정신 계통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2)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4)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 5) 뇌전증 6)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발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 등)이나 공황장애